



위반사항 등의 과태료 부과 기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구분	신고 기한	변경신고 대상	위반 시 과태료		
			1차	2차	3차
변경신고 (허가규모)	사전 신고	배출시설 규모 50% 미만 증설 또는 배출시설 규모(신고규모로) 축소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처리시설의 규모 변경			
		처리공법 변경			
		위탁처리 변경			
	변경후 30일 이내 신고	가축 종류 변경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액비 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변경 배출·처리시설의 폐쇄			
구분	신고 기한	변경신고 대상	위반 시 과태료		
			1차	2차	3차
변경신고 (신고규모)	사전 신고	배출·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 변경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위탁처리 변경 포함)			
		가축 종류 변경			
	변경후 30일 이내 신고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액비 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변경			
		배출·처리시설의 폐쇄			
구분	신고 기한	지위승계신고 대상	위반 시 과태료		
			1차	2차	3차
지위승계 (허가, 신고)	변경후 30일 이내 신고	기존 시설설치자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법인의 합병	50만원	70만원	100만원
구분	축사 규모	위반 사항	위반 시 과태료		
			1차	2차	3차
처리시설 설치기준	허가, 신고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허가규모	처리시설 미설치로 인한	50만원	80만원	100만원
	신고규모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50만원	80만원
구분	축사 규모	위반 사항	위반 시 과태료		
			1차	2차	3차
배출시설 관리기준	허가규모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신고규모		30만원	50만원	70만원